

ARTICLE

04

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손대원 국립민속박물관

ANNUAL REVIEW I



77 서론

79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거생활의 제약

1. 일상적 주거생활의 편리성 추구에 대한 제약
2. 현대적 부속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약
3. 고가옥 보수과정의 제약

87 국가권력과 사유재산권의 충돌과 절충

1. 사회변동과 문화재보호법의 충돌
2. 중층적 제약의 절충으로서 사유재산권 행사

93 결론

민속마을 거주자의 법적 제약으로 인한 충돌과 절충⁰¹

K지역의 Y마을 고가옥 거주자를 중심으로

손대원

국립민속박물관

투고일자 : 2009. 10. 28 | 심사일자 : 2009. 12. 6 | 게재확정일자 : 2009. 12. 09

국문초록

민속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려고 하고, 국가 역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서론

한국사회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젊은층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농촌의 전통문화가 급속하게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전통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전통 민속자료를 개별적으로 항목별 지정하던 것과는 달리 자연마을 전체, 즉 인문 그리고 자연환경을 포괄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전통적 민속마을을 설계하게 되었다⁰².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과 각종 건축규정이 없어서 상당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80년에 지방민속자료로 민속마을을 지정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에 지정된 마을은 제주성읍민속마을, 경주양동민속마을, 안동하회마을이다. 이후 이 마을들은 국가중요민속자료로 그 등급이 격상되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민속마을⁰³로 지정된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마을로서 지금까지 전통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민속마을로 지정된 곳은 7개로⁰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마을 전체가 보호를 받고 있다. 민속마을에 적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개별적으로 지정되는 일반 유형문화재와 달리 마을 내 전체 주민이 실제 거주·사용하는 가옥과 부속건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⁰⁵. 문화재보호법이 마을 전체를 지정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마음대로 개보수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속마을 거주자

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거생활의 제약이 가장 크다.

민속마을 지정은 마을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의 첨단 기술이 주거생활에 도입되어 일반 사람들은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민속마을 주민들은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민속마을 지정과 함께 주민들은 각종 건축규제를 받으며 직간접적으로 주거생활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부문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된다⁰⁶. 그러므로 민속마을 주민들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예를 들어 공사가 더 길게 지연되는 등의), 많은 제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오히려 문화재보호법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불법 탈법적인 문화재 파괴행위를 조장하게 되어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재보존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⁰⁷.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전통문화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와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주자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화재보호법과 주거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이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건축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연구자들은 탁수성, 여경옥, 이호열, 이왕기, 이주옥, 강영환, 장성조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의 주거생활은 문화재보호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전제하

01 이 글은 필자의 2006년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석사학위 논문인 「민속마을의 주거생활 제약과 거주자의 대응」의 3장과 5장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02 김용환·오석민, 1995,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비교민속학』 제12집, 비교민속학회, p. 49

03 여기서 민속마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법령에 의해서 소위 민속마을은 '전통건조물보존지구'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런 마을들은 민속마을로 통칭되며 마을 주민 역시 자신들의 마을을 공식적인 용어로 부르기도 '민속마을'이란 용어를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김창민, 2009, 「민속마을 지정과 전통의 정치성-외암리 사례-」,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1호, 역사문화학회, p. 459 참고) 실제로 필자가 마을을 조사할 때도 민속마을이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04 전남 승주낙안읍성민속마을(사적 제302호), 경북 안동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 제주도 성읍민속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8호), 경북 경주양동마을(중요민속자료 제189호), 충남 아산외암마을(중요민속자료 제236호), 강원도 고성왕곡마을(중요민속자료 제235호), 경북 성주한개마을(중요민속자료 제255호)이다.

05 김용환·오석민, 1995, 위의 논문, p. 44

06 김용환·오석민, 1995, 위의 논문, p. 44

07 유수진, 2008, 「문화재보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0집,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p. 128

에 연구를 하였다. 탁수성은⁰⁸ 문화재지정 가옥이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보존과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거주자들은 문화재지정 가옥을 무분별하게 개조하고 원형을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문화재지정 가옥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서 거주자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현대주거생활에 맞게 주거공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경옥은⁰⁹ 낙안민속마을 민가 거주자들의 주거생활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변화의 요인 가운데 문화재보호법의 강력한 제약을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 낙안민속마을 민가 거주자들이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거주자들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국가의 문화재정책에 의한 강제적 제약이라고 여긴다. 그 결과 주민들은 국가의 문화재 정책에 반발하여 주거공간을 불법적으로 개조, 신축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여경옥은 민가의 보존상태를 조사, 연구하여 민속마을 주거공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호열은¹⁰ 민속마을과 마을 내 전통주택의 원형 훼손을 조사하고 바람직한 보존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이 힘들기 때문에 법제도 측면의 지원으로 관과 민이 유기적 연결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왕기는¹¹ 외암마을이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1년까지의 주거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외암마을의 주거는 수차례 복원과 보수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주민들의 주거생활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거주자에 의한 가옥의 변화는 불가피하여 주거의 문화적 가치가 매우 훼손

된 것이라 하였다. 이에 그는 외암마을의 주거변화의 요소를 파악하고 그 변화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주옥은¹² 충청지역에 문화재지정 한옥을 대상으로 전통적 주거공간이 현대의 주거생활을 수용하면서 공간적 변화와 그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공간의 변화에 따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강영환은¹³ 경상남도 지방의 건축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해서 보존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건축 문화재의 변형실태를 주목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보존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화재 보존제도와 행정의 건축 문화재의 변형에 중요한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하였다. 장성조는¹⁴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 관리소홀, 자연적 변형, 사회 및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주거생활이 불편해지자 가옥의 도시적 개조 등으로 인해서 보존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의 관리 및 생활상태를 조사하고 건물의 변화·변형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재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문화재보호법과 재산권에 대한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우성기, 정 훈이 있다. 우성기는¹⁵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국민에게 불공평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이므로 그 보상 또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문화재보호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 훈¹⁶은 하나의 사물이 문화재로 지정되면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제한이 어떤 의미를 지니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산권 행사의

08 탁수성, 1993, 「문화財指定 傳統家屋 보존을 위한 住居空間 이용형태 및 변형실태 연구 : 西部慶南地域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09 여경옥, 2003, 「낙안민속마을의 주거변형 및 보존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호열, 2005, 「민속마을 및 전통주택의 보존」, 『건축』 제49권 12호, 대한건축학회.

11 이왕기·이강복·최흥기, 2001, 「牙山 外巖마을의 住居變化에 관한 研究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지정 이후 2001년까지-」, 『건축역사연구』 제10권 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2 이주옥·한필원, 2002, 「충청지역 문화재지정 한옥 생활공간의 변용」, 『大韓建築學會 學術發表論文集』 제22권 제2호.

13 강영환, 1995, 「地方 建築文化財의 保存과 變形實態에 관한 調査研究」, 『건축역사연구』 제7권, 한국건축역사학회.

14 장성조·김일진, 1994, 「文化財로 指定된 傳統住宅의 住居行態 및 變形實態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學術發表論文集』 第14卷, 第2號.

15 우성기, 2006,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16 정훈, 2003, 「문화재지정과 재산권보호」,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제한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문화재보호법 관련 논문들은 대체로 법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이 실제로 문화재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 결과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연구가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된 것이지만, 그 소유자나 거주자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어떻게 그 법을 인식하며, 그 법에 적응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속마을 고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후 주거생활의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과 그 실현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적응을 연구하는 것이라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민속마을 고가옥의 주거생활이 문화재 지정 이후 사회변동과 문화재보호법의 충돌에 의해서 어떤 제약을 받았으며, 이에 거주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와 기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화재보호법과 민속마을 거주자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체험한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생각은 상반될 수밖에 없다. 특정 마을을 민속마을로 지정함으로써 국가는 마을 주민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며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정한 규정과 틀에 자신들의 생활을 적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을주민들은 민속마을의 의미를 국가와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며, 국가가 정한 규칙도 자신들의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지배와 의도를 무산시키기도 한다¹⁷. 이렇듯 상반된 입장을 가진 양자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민속마을 거주자의 입장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바라보고자 한다.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거생활의 제약

1. 일상적 주거생활의 편리성 추구에 대한 제약

Y 마을 사람들이 주거생활에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옥을 거주자 마음대로 개보수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고가옥 거주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주거생활의 상당부분 법적 제재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재가 부엌의 현대식 개조, 보일러의 설치, 샤워실의 신축, 수세식 화장실의 신축 등이다. 주거생활을 하면서 고가옥 거주자들은 이러한 제약 때문에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없다. 거주자들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변화를 중단시켰고,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하려는 욕구를 차단하였다.

현대생활에서 부엌은 매우 중요한 주거생활의 공간으로, 현대식 부엌은 현대가옥의 상징물이고, 주부들의 선망의 대상이다¹⁸. 농촌의 대부분 가옥도 재래식 부엌보다 훨씬 편리한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하였다. Y 마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가옥이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하였다. 몇몇 하지 않은 집도 있으나 이들은 대체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현대식으로 개조하지 않았다. “부엌이라고 하기에 뭐하고, 주방이라고 하기에 뭐 하다. 주방이라고 할 수도 없다. 부엌은 입식으로 바꾸어 놓아도 입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OO당 종손의 말로 여기서 부엌은 재래식 부엌이고 주방이라는 것은 현대식 부엌을 말한다. 종손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비록 부엌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식탁을 놓는 등의 개조를 하였지만 그것을 결코 개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에는 만약 문화재보호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개조를 하였을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OO당의 경우도 부엌 공간이 매우 좁아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두명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17 김창민, 2009, 앞의 논문, p. 459

18 함한희, 2005, 『부엌의 문화사』, 살림, p. 9

다. 그리고 ○○고택의 경우 재래식 부엌에서 도저히 할머니가 생활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기존의 부엌은 그대로 두고 안방 옆에 있는 찬방을 부엌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역시 좁기 때문에 최소한의 취사도구만 두고 취사를 할 뿐 여타의 부엌처럼 다양한 취사도구를 보관할 수 없다.

고가옥에 살면서 또 다른 불편은 바로 화장실 문제이다. 부엌, 욕실과 마찬가지로 화장실도 제법 현대화된 시설이다. 그러나 고가옥의 화장실은 여전히 재래식이다. 그러므로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식이나 며느리, 손자들은 무엇보다도 집 밖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화장실도 불편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니까. 아들과 딸은 집에 오면 불편하다고 막내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겨울에 추우면 화장실 가기 싫다고 그리고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서울은 추운 것을 모르고 사는데. 집이 불편해서 안 올려고 한다¹⁹.”

위의 말처럼 현재 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서 그 불편함을 잘 모른다. 그러나 외지에서 생활하던 자식들이나 손자들은 재래식 화장실에 거부감을 가진다. ○○고택의 할머니에 따르면, 손자가 방학 때 이곳에 오면 집안의 화장실이 불편해서 이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마을 입구에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한다. 그리고 고가옥의 화장실은 여타의 주거공간과 다르게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관광객들이 고가옥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깨끗하게 이용하지 않거나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가옥 거주자들이 화가 나는 것은 관광객들의 그런 행위

의 뒤처리를 자신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주자들은 가옥 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 하지만, 법적인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또한 건물의 문이나 창문에 방충망과 샷시를 설치할 수 없다. 고가옥이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집 주위에 숲과 나무가 많아서 벌레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름철에는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없다. 반면 겨울철에는 집 자체에 우풍이 세기 때문에 샷시를 설치하면 바람을 막을 수 있고, 난방비 또한 절약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재로 설치할 수가 없다.

고가옥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깔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통적인 옛 모습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²⁰. 하지만 거주자들은 마당이 흩이기 때문에 주거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안 그러면 마당도 시멘트하고, 길도 다 포장하는데 포장도 못하고, 비가 오면 파이고 다시 메어주고, 이 보다 못한 조금한 동네도 다 농로를 포장해주는데, 이 동네 포장한 곳이 어디 있노²¹.”

이처럼 거주자들은 마당을 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마당에 물이 고여서 질퍽하게 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옥이 산중턱에 있어서 빗물 때문에 마당과 가옥 앞길의 토사가 흘러내려 사람이 다니기에 무척 불편하다. 강한 바람이라도 불게 되면 마당이나 길의 흩이 모두 집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하지만 고가옥의 마루에는 샷시가 설치되지 않아서 마당과 길에서 날려 온 흩먼지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이 먼지들은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방의 평면도 원칙적으로 변

19 ○○원, 66세, 남.

20 문화재청, 2004, 『민속마을 보존·정비 및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문화재청, p. 5

21 ○○락, 76세, 남.

경할 수 없다. 하지만 내부 칸막이의 제거는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방안에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고가옥의 방들은 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을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거주자들도 가전제품이나 좋은 가구를 방안에 두고 싶어한다. 하지만 ○○정과 ○○고택의 경우 안방에 가구를 놓을 공간도 없을뿐더러 입구가 작아서 가구가 안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루에 두었다. 이처럼 가전제품과 가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고 방의 입구가 작기 때문에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방안에 놓을 수가 없다. 거주자는 어쩔 수 없이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대청마루나 밖에 보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가구와 가전제품을 외부에 보관하게 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파손의 확률도 높기 때문에 거주자에게는 무척 불편해진다.

주거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편리하게 고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 거주자들은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강제로 규제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법 제2조의 2)고 선언하고 있다. 문화재는 원형으로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지금의 사고와 문화, 기술로 변형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재료를 임의적으로 가미하거나 개작되어서는 안 된다²².” 결국 국가에서는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고가옥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제약하고 있다.

2. 현대적 부속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약

Y 마을 고가옥은 대부분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지정되었는데, 이 고가옥의 외형은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새로 지은 건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상당히 진보하였다. 특히 교통체계 및 행정구역 개편,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급증과 대형 농기계의 도입 등은 마을의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되었다²³. 결국 고가옥 거주자들은 발달된 기술의 혜택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체된 시공간 속에서 생활하였다. 이것은 거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재 정책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선택받은 것이다.

현재 고가옥 거주자들이 가장 설치하고 싶은 부속 시설은 보일러와 샤워실이다. 이것은 <표 1>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위의 표는 2002년 Y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주민의식을 조사한 것으로 이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수리하기를 원하는 곳이 부엌과 목욕탕이다. 목욕탕의 경우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그 희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부엌의 경우 대체로 고가옥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개조로 조금은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하지만 거주자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은 바로 목욕탕이다. 고가옥의 경우 가옥 내에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생활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대 가옥에는 필수적인 시설인 목욕탕이 고가옥에 없기 때문에 거주자

표 1 기존수리대상 및 희망수리대상 (3항목씩 응답)²⁴

단위 : 호(%)

년도	분류	지붕	부엌	난방시설	화장실	마당창고	목욕탕	전체	기타	조사가구수(%) 총응답 문항수
기존수리대상	2002	15 (18,8)	35 (43,8)	12 (15,0)	13 (16,3)	2 (2,5)	5 (6,3)	15 (18,8)	3 (3,7)	80(100) 100
희망수리대상	2002	13 (16,3)	2 (2,5)	2 (2,5)	25 (31,2)	6 (7,5)	35 (43,8)	7 (8,8)	9 (11,3)	80(100) 99

22 정문교, 2001,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pp. 272-273

23 강동진, 1997, 앞의 논문, p. 151

24 강동진, 2003,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양동마을 주민의식 변화』, 『한국조경학회지』 제31권 3호, 한국조경학회, p. 51

들이 설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고가옥 거주자들은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고가옥 거주자들도 최소한의 현대적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기존의 공간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고가옥 거주자들이 목욕탕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바로 부엌이다. 부엌의 한 공간을 개조해서 간이 목욕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택과 ○○고택, ○○정에도 목욕탕이 부엌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것을 목욕탕으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세면이나 샤워만 할 수 있는 간이 목욕탕 정도로 여긴다. 이들이 부엌에 목욕탕을 설치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쉽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욕탕을 보면 불편한 점이 많다. ○○고택의 경우 거주자가 직접 부엌의 한 구석에 목욕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고택도 부엌에 목욕탕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주자들이 좁은 부엌을 다시 세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엌을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처럼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는 가전제품을 부엌에 두지 못하고 다른 곳에 위치하므로 취사활동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정의 경우 부엌에 냉장고를 보관할 수가 없어서 부엌 외부에 두고 생활하고 있다. 제한된 공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려다 보니 원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부엌의 주기능인 취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고택의 경우 목욕탕 때문에 취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방을 간이 부엌으로 개조해서 생활한다.

“큰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하노. 시멘트로 해 놓은 것은 다 뜯었다. 자기내들이 다 안 파버렸다. 시멘트 한 쪼가리도 못 붙인다. 샴시도 못 한다. 전혀 못 한다.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목욕탕하고 수세식 변소를 뒷문 뒤에 했는데 시에서 와서 다 뜯었다. 안방 뒤에 다 해가지고 없었다.

돈으로 300만원 손해 봤다. 우리는 할 때 안 보일 줄 알고 했는데²⁵.”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거주자는 주거생활이 불편해서 불법 행위인지 알면서도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새 건물을 지었다가 K시에 의해서 철거당했다. 거주자는 건물 뒤편에 목욕탕을 지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K시에서는 고가옥과 어울리지 않고, 평면이 변형되기 때문에 철거하였다. 고가옥 거주자들도 다른 일반 가옥의 거주자처럼 편하게 씻을 권리가 있다. 그리하여 거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거주자의 그 권리가 제약받는다.

또한 고가옥 대부분의 난방방식이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실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따로 설치할 수가 없다. 대부분의 고가옥에서 보일러실도 목욕탕과 마찬가지로 부엌에 설치하였다. 보일러가 부엌에 설치되어 있으면 주거생활에도 불편한 점이 있지만 특히 화재의 위험이 많다. 왜냐하면 부엌은 사람들의 출입도 많고, 물이나 가스렌지 같은 취사도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택처럼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고가옥의 경우 연탄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부엌을 이용한다. 이처럼 부엌이 가진 취사의 기능이 보일러와 목욕탕이 들어오면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부엌은 공간이 넓어야 일을 하기가 편리한데, 다른 공간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게 되면 거주자들은 더욱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된다. 더욱이 고가옥의 부엌은 현대 가옥의 부엌보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현대생활에 맞는 취사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Y 마을의 주생업은 ○○평야를 중심으로 한 논농사이다. 강동진은 1994년에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는 전체 35.9%였다가 2002년에 52.5%로 증가하였는데, 이

것을 축산, 시설재배 등의 농업활동과 특산품개발 등의 제약으로 나타나는 생산활동의 위축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²⁶. 고가옥 거주자들도 주생업은 논농사일 뿐 딱히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Y 마을에서는 가축이나 환금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다²⁷.

Y 마을의 생업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마을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부로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사 이외는 경제적 수입원이 없다. 지금은 논농사를 지을 때 과거처럼 축력이나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전 과정에 기계를 이용한다. 따라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농기계는 아주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된다. 고가옥 거주자 역시 농사를 지을 때 농기계를 이용하지만, 그 관리에서 불편을 겪는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고가옥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창고나 공간에는 농기계를 보관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거주자가 가옥 외부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법적 제약 때문에 창고를 지을 수 없다.

표 2 농기계 관리상의 문제점(보유가구만 해당) 단위: 호(%)

분류	보관장소	수리의	고가의	운전의	보유가구
년도	없음	곤란	가격	곤란	
1994	17(63.0)	5(18.5)	5(18.5)	-	27호(100)
2002	35(79.5)	5(11.4)	3(6.8)	1(2.3)	44호(100)

위의 표를 보면 농기계 보유가구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보관 장소가 없어서 농기계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다. 1994년보다 오히려 2002년에 보관 장소에 대한 불만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기계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가옥이나 마을에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기계를 마당에 보관하게 된다. 농기계가 마당에 있게 되면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를 입게 된다. 비나 눈을 맞아서 농기계가 부식되거나 파손하는 일이 발생하며 마당을 상당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마당에서 할 수 있는 가사노동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다. 또한 농기계의 부품이나 연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고 그대로 마당에 방치되기 때문에 거주자에게 위생적으로 불편함을 준다. 이처럼 보관 장소가 없어서 고가옥의 농기계들이 마을곳곳에 방치되어 있어 경제적 및 경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²⁹.

Y 마을의 많은 고가옥이 부역을 개조하거나 내부 공간에 목욕탕을 짓다보니 결국 문화재청에서도 내부에 한해서 거주자가 주거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개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완화하였다³⁰. 하지만 이런 완화조차도 거주자들에게는 제약으로 느껴진다. 일단 거주자들이 현대적 시설을 건물 내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짓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거주자들이 목욕탕이나 보일러실, 그리고 부속창고를 설치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내부 공간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편리함을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그 형태를 고가옥의 형태에 맞추어서 하다보니 거주자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오히려 주거생활에 불편만 가중시킬 뿐이다. 결국 국가에서는 거주자의 편의를 생각해서 법적 강도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다보니 오히려 거주자의 불만이 더 커질 뿐이다.

26 강동진, 2003, 앞의 논문, p. 52

27 "경제난에 나도 소리도 한 마리 먹일 수 있다. 왜 못 먹이나 그거 했다가 벌금 300~400만원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중략) 문화재청에서도 정부에서 서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안 받도록 해주어야지, 좀 뭐 좋게 소도 먹이게 해 줘야지. 그것도 통제를 하니, 천체 이곳에 돈 나올 때가 어디있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노 이거라. 나도 농사를 짓지만 썰내서 무순놈의 아이들 공부 시키노. 서민들은 문화재로 지정 되어서 좋은 것이 없다. 더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 깨끗이 해놓고 불룩을 담 쌓고 문화생활하고 싶지, 요즘 이래 놓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노. (중략) 정부에서도 민속촌을 할라고 하면 이주를 시키주든지 아니면 서민들이 생활에 좀 도움이 되게 해주든가. (○○원, 남.)"

"시청에서 제재를 가하는데 먹고 사는 것을 우야노. 가건물 붙이지 마라고 하는데 가건물 안 붙이면 예를 들어서 차가 있으면 차고 만들려면, 소 같은 것 먹고 옛날 창고처럼 못 하잖아. 브로크로(벽돌) 하면 일하기 쉽고 돈 아끼고, 그걸 못 하게 하니까 불만이 쌓인다. 그러니까 소 먹이는 사람이 없지."(○○동, 남.)

28 강동진, 2003, 앞의 논문, p. 53

29 강동진, 2003, 앞의 논문, p. 53

30 2004년 문화재청에서 『민속마을 보존·정비 및 종합정비 세부실천 계획』의 가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방, 부엌, 욕실, 보일러실, 마당, 부속시설(농기구고, 창고 등)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3. 고가옥 보수과정의 제약

고가옥 보수과정에서 거주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옥을 보수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가옥에 기와나 기둥을 교체할 때는 거주자가 건물에서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이들은 공사 시간에 거주자들이 생활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때 생활도구를 모두 가져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생활도구라도 가져가야 된다.

“수리할 때는 댄 집에 가서 잔다. 불편하다. 그게 이 문화재 업자들이 요것을 해가지고 양동것만 해서, 예를 들어서 봄에 시작하면 추석에 들어와서 차례 지내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나중에 안 해주고 겨울까지 가게 한다. 업자들이 지켜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할 기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해주고 댄 곳에 가서하고, 여기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데³¹.”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가옥 수리 시 거주자들은 수리하는 가옥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된다. 하지만 가옥을 수리할 때 수리업체나 관공

서에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가 직접 거처를 마련해야 된다. 따라서 거주자들은 주로 마을에 사는 친척집이나 이웃집에 임시 거처를 마련해서 생활한다. 거주자들이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서 생활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들이 이웃이나 친척집에서 임시로 거처하기 때문에 생활도구나 살림 전체를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와서 생활한다. 이것은 결국 거주자가 굉장히 한정된 주거생활을 한다는 뜻이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자신의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큰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

고가옥 보수를 하면서 거주자에게 공사 기간 동안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므로 고가옥 거주자들은 문화재보호법을 불신하게 되고, 나아가 문화재청과 K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 고가옥 보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주자들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면 결국 고가옥 보수에 대해 거주자들이 꺼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가옥 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제약은 고가옥 보수과정에서 보수 외에 다른 경비는 거주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

〈방〉

- 전체적인 평면은 원칙적으로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 방을 크게 사용하기 위한 내부 칸막이 벽 제거는 구조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거할 수 있으나, 원형의 가구(架構)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보존한다.
- 난방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부엌〉

- 추후 원형을 복원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원형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을 높이는 시공방법을 모색한다.
- 부엌에 설치하는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한다.

〈욕실〉

- 본체 외형 및 평면의 변형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체 내에 욕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본체 외부에 덧붙인 욕실은 설치할 수 없다.
- 평면 변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창고 등 부속체에 욕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부속체가 없는 경우 창고, 화장실, 욕실, 보일러실을 함께 넣어 욕실을 설치할 수 없다.

〈보일러실〉

- 가능한 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본체 내부, 창고 내부 등)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단독건물로 하지 말고 필요한 부속공간을 합쳐 한 건물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예 : 창고 + 화장실 +보일러실)
- 본체에 붙여 달아낼 경우 처마선 이내로 하고 본체의 구조, 재료와 어울리도록 한다.
- 연료탱크를 외부로 노출시키지 말고 본체와 유사한 재료 등을 사용하여 외부를 가리도록 한다.

〈마당〉

- 마당의 표면은 흙바닥이나 마사토 깔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통적인 옛 모습대로 유지하도록 한다.
- 마당에는 전통수종을 심고, 외래수종은 점차 전통수종으로 교체한다.
- 건물앞 마당에는 교목류의 수목을 심지 않는다.

〈부속채(농기구고, 창고 등)〉

- 블록구조,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변형된 부속채는 원형으로 보수한다.
- 원형고증이 어려운 부속채 배치 및 보수는 본체의 형태와 구조를 감안하여 잘 어울리도록 한다.
- 부속채 단독건물의 규모는 마을 내 일반적인 부속채의 규모에 준한다.

31 ○○동, 남.

“전기도 우리 보고 넣어라고 하고, 저거(문화재 수리업체) 넣어주지 않는다. 우리 돈으로 넣는다. 수도도 우리 돈으로 넣어라고 하는데, 못 넣어서 돈이 없어서. 본대 지하수로 했는데, 이 집을 짓는다고 지하수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비가 오면 붉은 황토물이 나온다. 저 것을 옛날처럼 문도록 하면 300만원이 더 든다고 한다. 지하수 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더라.(말을 하더라) 문화재에서는 안 해준다. 집만 딱 해준다. 전기하고 수도는 안 해준다³².”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는 건축물 보수비용만 부담할 뿐 새롭게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 가옥을 전면 보수할 경우에는 그 건물에 전기와 난방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국가가 아닌 거주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원래 전기와 난방시설은 거주자들이 생활하면서 설치해 두었던 것으로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비용은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³³. 하지만 고가옥을 수리하게 되면 거주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기존 가옥에 보일러를 설치해서 생활하다가 가옥 보수 시에는 보일러를 다시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들을 놓아주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불편하게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다시 보일러를 설치하려하면 거주자들이 이중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거주자와 보수 업체 사이의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때문에 주거생활이 불편해지기도 한다. 보수 업체는 문화재청과 K시에서 작성한 평면도를 기준으로 작업하는데, 거주자들은 보수 업체가 고가옥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방의 크기나 형태를 변경시킨다고 인식한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방의 크기나 형태가

변경된 가옥 생활에 대한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일하는 사람은 저거가 전문가라고 하고, 우리는 머리가 허엿도록 살아온 그것이 있는데... 못하나 박을 때가 없고, 방이 작고 방이 작아졌다. 겉으로 보면 고대 광실이고 안에는 보면 면적이 영 줄었다. 농을 몇 개나 뚜드려 부셨다. 본대(본래) 저게 저렇게 들어간 농이거든요. 높이지 않고 본 높이고, 여기서 시작해서 농 있던 것을 안 들어가서 뚜드려 부셨어 불로 태고 있다. 예전하고 똑같이 안 해준다. 겉으로 보면 크게 잘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가 사는 것하고는 정반대이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³⁴.”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옥 보수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었던 가구들이 가옥 보수 이후에 방의 크기와 형태가 변경되어서 가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거나 마루에 두게 된다. 또한 거주자들이 주거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발받침대나 마루를 만들어 둔다. 왜냐하면 고령의 거주자들이 생활하는 데 힘이 들고, 부엌과 방의 높이 차이로 인해 다니기에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가옥의 보수 과정에서 모두 철거되고 설사 재설치된다고 해도 보수 기술자들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거주자들이 다시 수리하거나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³⁵.

더욱이 거주자들이 가옥 보수에 불만을 가지는 것은 가옥을 보수하면 주거생활이 더 편리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전의 주거생활보다도 더 불편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 가옥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가옥은 가옥을 보수하고 이사한지 한 달이 안 되었지만 벌써 벽지에 곰팡이가 피고, 장판이 일어났다. 원래 가옥에 보일러

32 ○○석, 여.

33 조사 당시인 2006년에는 전기 시설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거주자의 부담이었지만, 2008년부터 K시에서 일정부분 담당해주고 있다.

34 ○○석, 여.

35 “문화재 되어서 집을 스레이트 집이라도 내가 당기기 좋고 살 수 있도록 지어서 살았는데, 그런데 내 이 다리를 봐라, 다리가 옛날부터 아픈 다리인데 여기가 계단을 3개, 4개 올라오니 바쳐서 명이 들었다. 옛날에는 스레이트 집이라도 나직하게 내가 당기기 좋도록 했고, 비가 와도 이렇게 물이 안 채이고, 바로 대문에서 들어오기 좋도록 했는데 (중략) 내는 못 다니니까 또 (다니기 편하게) 했다.”(○○석, 여.)

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보수하면서 구들로 교체되었다. 난방방식이 구들이 되면 연료 획득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보수 과정에서 구들을 잘못 놓아서 연기가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고 방에 열기가 잘 전달되지 않고,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연기가 부엌 안에 차면서 벽면이 검게 그을려졌다. 거주자는 어쩔 수 없이 배출기를 골뚱에 설치하였다. 이것은 결국 거주자들이 가옥 보수를 상당히 불신하게 만든 예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옥 보수 이후 거주자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장판이 일어나고 벽에 곰팡이가 피고, 구들을 잘못 놓아서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벽이 검게 그을리게 되니, 거주자들은 오히려 전보다 못한 주거생활을 하게 된다.

거주자는 친척이나 이웃집에 거주하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가옥 보수를 하였지만, 결과는 거주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 거주자는 가옥 보수를 통해 더 나은 주거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옥을 보수하기 전의 주거생활만이라도 유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오히려 가옥 보수를 하면서 기존의 주거생활보다 더 불편해졌다. 이렇게 거주자가 가옥 보수로 인해 주거생활에 제약을 받으면서 거주자들은 가옥 보수를 꺼리게 된다. 가옥 보수를 꺼리면서 거주자들이 스스로 가옥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파손된 곳을 그대로 방치한다. 또한 문화재청이나 K시에서 고가옥을 보수할 때 사소한 부분은 보수를 잘 해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붕의 기와 몇 장이 파손되어 방이나 마루에 비가 새면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 지붕의 기와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고가옥의 사소한 것을 모두 고쳐주다 보면 K시와 문화재청에서는 많은 인력과 재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K시에서는 사소한 것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실정이다. 하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 같아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다.

고가옥 보수는 국가에서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 고가옥 보수는 엄청난 혜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거주자는 가옥 보수로 인해서 주거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고가옥 보수는 문화

재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편의를 무시한 채 공사하고, 더욱이 기존 형태와 다르게 보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결국 고가옥 보수는 거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거주자들은 가옥 보수에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비록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자의 주거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주자는 보수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어서 가옥 보수는 전적으로 보수 업체가 문화재청과 K시에서 내려온 평면도를 기준으로 공사한다. 거주자는 보수 업체에서 융통성 있게 거주자의 입장을 고려해줄기를 원하지만, 업체측에서도 문화재청과 K시의 엄격한 규제로 거주자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업체는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주자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편리함을 위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다.

특히 고가옥 보수에서 거주자들이 가장 제약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분 공사이다. 가옥을 보수하게 되면 한꺼번에 가옥을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해 지붕을 하면 그 다음에는 기둥을, 다음해는 정침을 보수하는 식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매년 이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사 때문에 수시로 제약을 받는다는 뜻이다.

결국 가옥보수는 거주자가 주거생활을 하는 데 크고 작은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재 정책에 대한 불신만 높인다. 마을 사람들이 민속마을로 지정되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옥의 보수이다. 초기 무상으로 가옥을 수리해주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과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많은 자긍심을 가졌다. 하지만 거주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 문화재청과 K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과 사유재산권의 충돌과 절충

1. 사회변동과 문화재보호법의 충돌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전통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그 결과 전통문화가 수 없이 파괴되자, 국가에서는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역사적, 학술적, 건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의 경우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법으로 거주자가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거주자가 가옥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그 지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고가옥 거주자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는 단순히 고가옥의 원형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주거생활까지도 법으로 제재하려고 한다. 문화재보호법은 가옥이 거주자의 문화를 담는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옥의 보존만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거주자의 생활이 사회변동에 따라 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고 있다³⁶.

○○당이 문화재로 지정된 시기는 1970년, ○○당이 문화재로 지정된 시기는 1965년, ○○당과 ○○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된 시기는 1979년이다. 이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에는 주거생활의 변화가 심하지 않았고, 자연히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도 1980년대까지는 주거생활에 법적 제재를 강하게 받지 않았다. 이렇듯 1980년대까지는 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신축과 보수가 상당히 자유로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할 때는 빨랐다. 이것(현대식 부엌)할 때는 마음대로 했다. 그 때는 제재가 안 심했다. 이제 와서 제

재가 더 심하다. 초창기에는 제재가 없었다. 그 때는 관리하는 사람도 시에도 별로 관여 안 하고 그 때는 뭐 거의 동네에 대해 시에서는 관여를 안 했지. 지정만 되어 있었지³⁷.”

위의 말처럼, 비록 Y 마을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고가옥의 개조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가옥의 개조가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이 때에는 법적으로는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조를 할 수 없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에서는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Y 마을의 고가옥 철거와 보수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재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농촌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대적 농기계가 대거 도입되고, 주거생활이 현대화되는 등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고가옥 거주자들 역시 농촌사회의 일반적 변동의 추세를 수용하려고 하였지만 고가옥 거주자들은 문화재보호법이라는 장벽에 부딪혀 과거의 주거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가옥 거주자들은 농촌의 일반 민가거주자들처럼 고가옥을 부셔버리고 다시 양옥을 짓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최소한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 가옥의 일부를 개조해서 생활하고 있다. 고가옥에서 가장 많이 개조된 것이 부엌과 난방방식으로, 대부분의 고가옥에서 이에 대한 개조가 이루어졌다. 고가옥 거주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재래식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편리한 현대식 부엌으로 개조하고, 난방방식을 땀감 난방방식에서 보일러 난방방식으로 교체하였다. 하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부엌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것, 난방 방식을 보일러 난방 방식으로 교체한 것은 문화재보호법의 제재를 받을 사항이다. 이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의 거주자들은 비록 자신이 주인이라도 국가의 허락 없이 고가옥을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고가옥 거주자들 역시 부엌이나 난방방

36 김근영, 2003, 『현대도시에서 한옥의 의미 - 서울 북촌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37 ○○필, 49세, 남.

식처럼 과거의 주거생활 방식이 현대 생활에 맞지 않으면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한다. 더욱이 비지정문화재 가옥의 거주자들은 주거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가옥을 개조하고 보수하며 새로운 문화를 손쉽게 받아들여서 생활에 적용한다. 하지만 지정문화재 가옥 거주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 분명 고가옥 거주자들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 생활에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인다.

고가옥 거주자들은 부엌 형태와 난방방식을 변화시켜 최소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거주자들의 가장 큰 불편은 세면과 위생과 같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것이다. 고가옥에 샤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거나 기존의 공간을 개조해야 된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새로운 공간을 신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이런 시설이 고가옥에 설치되면 외부에서 한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가옥의 원형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민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을 자기들만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씻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밖에서 씻거나 아니면 수도가 얼어 씻을 수도 없게 되고 여름철에는 밖에서 일을 하고 난 후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샤워를 할 곳이 없다. 화장실 역시 재래식이다 보니 밤에는 아이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거주자들은 가옥 내에 샤워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지만, 국가에서는 이런 행위를 문화재의 원형 훼손행위로 간주하여 법적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고가옥 거주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행위는 문화재의 원형 훼손이 아니라, 거주자 자신의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거주자가 주거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행위와 국가가 문화재를 보호

하려는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현재 고가옥 거주자들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위해 고가옥을 부분적으로 개조하거나 수리하지만 거주자들은 이러한 개조나 수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도저히 고가옥에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2004년도에 '가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기준'³⁸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고가옥 거주자가 조금이나마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문화재보호법의 제약을 완화시킨 것은 고가옥 거주자들이 주거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서 불법적으로 고가옥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하게 되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 설치기준에 대해서도 거주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결국 국가의 문화재보호 정책과 고가옥 거주자가 주거생활의 편의를 추구하려는 것은 평행선 위에 있다. 이 두 선은 결코 만나기 어렵지만, 이 둘의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와 고가옥의 거주자들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가에서는 고가옥의 원형을 보존한다는 논리만으로 고가옥 거주자가 주거생활에 필요한 현대시설물을 도입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거주자 역시 자신들의 주거생활의 편리만을 좇아서 고가옥의 구조나 모양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만은 없다. 결국 문화재보호법과 사회변동 사이에서 국가와 거주자들은 각자의 목적만을 추구할 수 없다. 국가와 거주자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갈등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절충하고 있는 것이다.

2. 중층적 제약의 절충으로서 사유재산권 행사

사유재산권이란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다³⁹.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재산은, 비

38 각주 31번 참고.

39 http://krdic.naver.com/search.nhn?query_euckr.

록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사유재산권 행사의 권리란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보다는 거주자 및 소유자가 마음대로 가옥을 보수·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사유재산이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존주체인 국가(문화재청)와 소유자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Y 마을에서 첨예하게 나타나는 양자간의 갈등은 '주거 복원과 관련된 갈등'으로 고가 소유자는 내부 개조 문제로, 일반주민들은 초가 복원 문제로 문화재청과 갈등 관계에 있다⁴⁰.

Y 마을 고가옥 거주자들이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가옥을 마음대로 개조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고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거주자가 임의로 현상을 변경하거나 개조하면 법적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만약 거주자가 고가옥의 형상을 변경하고 싶으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⁴¹. 거주자들은 방의 크기를 변경하거나 사시를 설치하려고 하면 항상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거주자가 국가기관에 편의시설 설치 신청을 하면, 국가기관이 승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거주자 대부분은 승인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승인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승인에 소요되는 시간도 너무 길어서 국가기관에 승인 신청을 하려하지 않는다. 그 대신 거주자들은 자신이 임의적으로 고가옥을 개조하고 있다. 국가기관은 문화재보호라는 명목으로 고가옥 거주자의 이런 행위를 허용하지 않지만, 거주자는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따금씩 고가옥을 개조한다. 이에 국가기관에서는 고가옥 거주자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제약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거주자의 주거생활을 제한하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가옥 내 주민 편의시설 설치기준⁴²

기본원칙

- ①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각 마을별 가옥 내 건물의 전통적인 공간 배치구조는 보존되어야 할 문화유산으로 각종 시설의 설치로 인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 ② 가옥 본체 및 부속건물의 외부형태는 마을별 가옥구조·형태 등이 반영된 조선시대 전통양식을 원형으로 한다.
- ③ 외부로 노출되는 기단부와 초석은 석재를 사용하여 전통수법으로 설치하되, 건축물의 기능과 용도, 규모에 맞도록 한다.
- ④ 건물 외부로 시멘트, 금속, 플라스틱 등 현대적인 재료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⑤ 생활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건물의 신축이 필요한 경우 전통가옥의 배치수법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고, 신축 건물의 높이와 규모는 당해 가옥 내 기존 건물의 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형태는 기존 가옥과 어울려야 한다.
- ⑥ 이미 원형을 크게 훼손한 시설은 이 지침에 의거하여 점진적으로 원형으로 환원한다.
- ⑦ 화장실 내부시설, 욕실 내부시설, 부엌 내부, 보일러·난방시설, 현대식 창호, 기타 가옥의 원형이 아닌 생활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은 거주자가 부담한다.
- ⑧ 이 지침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 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에서는 고가옥 거주자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유재산권을 제약한다. 이 결과 거주자들이 일방적으로 국가로부터 손해만 입었다는 인식이 커졌다. 하지만 거주자들이 고가옥의 문화재 지정으로 전적으로 손해만 보고 제약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40 강동진, 1997, 앞의 논문, p. 175

41 "보호구역 내의 행위제한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① 현상을 변경하거나 ②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우성기, 2006, 앞의 논문, p. 434)

42 문화재청, 2004, 앞의 책.

“문화재 솔직히 말해서 규제를 받아서 뭐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면 다 무너졌다. 옛날 조상님들 것을 잘 받 들어서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것 하나가 아니잖아. 크게 보면은 진짜 문화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훼손하고 귀찮게 생각한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불편한 것을 따지면 말도 못하지 이 좋은 세월에.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지 않고 이루어 지던 것이 있더군요⁴³.”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가옥 거주자들이 사유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 거주자들이 얻는 이득도 있다. 거주자들이 보는 가장 큰 이득은 바로 가옥의 무상 보수이다. 만약 고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거주자들은 고가옥을 보수 하는데 막대한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가옥 거주자들은 가옥 보수에 막대한 경비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가옥의 문화재 지정은 거주자에게 커다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 고가옥 거주자들도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받지만, 고가옥의 무상 수리라는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가옥 거주자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이 높은 가옥 즉, 대종가나 파종가의 거주자들은 실제로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문중에서 수리해주던 가옥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주므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 대종가와 파종가의 종손들은 가계 계승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없이 종가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종가에서 살면서 파손되거나 수리를 해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경비문제이다. 과거 종가를 수리하고 보수 할 때는 문중 차원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고스란히 종가에 거주하고 있는 종손의 몫으로 돌아온다. 특히 한옥 수리는 일반 가옥에 비해서 그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이 집수리를 정부의 힘을 빌려서 하니까 내가 정부 돈을 사용하니까. 내가 갔다 쓰는 정부 돈은 십 수억이 넘는데, 내 노력에 이 정도 불편함을 느끼면서 십 수억을 쓰는 것은 뭐. 불편함은 많은 데 그 불편함을 나는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노력, 행위의 노력, 육체적인 힘 상응해서 그런 댓가를 건주어 보았을 때 내가 일평생을 살면서 정부 돈을 못 가져와도 한 20억을 가져다 쓸 것이다. 내 불편함을 따져보면 그것은 아주 드러나는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면이다. (중략) 내가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 불편함은 내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행위, 활동 모든 면에서 볼 때 그 불편함은 나에게 있어서 이익이라는 것이지⁴⁴.”

위의 말처럼 고가옥 중에서 위상이 높은 고가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해준다. ○○당과 같은 위상이 높은 고가옥 거주자들은 국가의 문화재 정책에 상당한 수혜자들이다. ○○당이 일반 민가에 비해 문화재보호법을 잘 준수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 법을 지킴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다는 것이다. 비록 주거생활이 일반 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다 불편하고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그 제약에 비하면 큰 것이다. 이들이 그 가옥의 원형을 잘 유지함으로써 이들은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혜택까지도 누리고 있다.

만약 국가에서 고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거주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제약만 한다면 어느 누구도 국가의 문화재 정책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그나마 가옥의 무상 보수 같은 경제적 혜택이 있기에 거주자들이 국가의 문화재 정책을 수긍하면서 생활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자들은 가옥의 무상수리와 같은 혜택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에 상응할 만큼 보상해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거주자들은 이런 혜택을 자신들이 받는 제약에 대한 부분적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43 ○○희, 여.

44 ○○락, 남, ○○당 종손.

“현재 마을에서는, 문화재로 마을이 지정된 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해에 반발하여 문화재 지정의 취소 또는 가옥 보수 등을 거부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한 정책의 추진과 손해에 대한 적절한 지원·보상의 결여로 인한 불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⁴⁵.” 이런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국가 기관과 거주자의 충돌과 갈등을 발생시켰다.

이런 충돌과 갈등으로 Y 마을 고가옥 거주자들은 문화재청과 K시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과 K시는 항상 자신들을 감독하고 제약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⁴⁶. 충돌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거주자들도 무조건 제약받기 보다는 거주자 나름대로의 지구책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이 바로 문화재청과 K시의 관리 감독을 피해 거주자들이 고가옥을 임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이다. 임의적 개조는 국가 입장에서는 문화재원형을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거주자 입장에서는 편리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다. 거주자들이 고가옥을 임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K시는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과 K시가 거주자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법적 처벌을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초가집이라고 해도 주방 만들어서 도시처럼 살지. 옛날처럼 사는 집이 없다. 불 때는 집도 없다. 지금 나 못가지로 누가 때노.(중략) 목욕탕은 쓰던 것 받아서 하지. 그것 한지 오래 되었다. 못 하게 해도 그것은 안에 있으니 밖에 들어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하면 살 사람이 없다. 여기에 누가 옛날처럼 사노⁴⁷.”

“겉만 문화재지. 속까지 다 하면 일상생활 하는 데 어렵지. 그러면 문화재 하려고 하나. 불편한 점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중략) 시청 사람들 저거도 사람인데 저거도 여기 와서 살아봐라고 해라⁴⁸.”

마을 주민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의 원래 의도와 달리 개별 단위의 음성적인 생산 관련 시설의 건립과 가옥 내부의 불법적인 변형을 유발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⁴⁹.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문화재청과 K시가 거주자 가옥의 편법적 증축 행위를 어디까지 묵인해주냐이다. 문화재보호법의 원칙에 따르면 문화재청과 K시는 거주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문화재청과 K시에서는 거주자의 이런 행위를 묵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고가옥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주자의 주거생활도 고가옥의 보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안 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개조를 크게 하면 우리도 넘어갈 수 없지. 기본틀을 무시한다든지, 저거 생활에 굳이 필요해서 하면 예전 같으면 보일러를 못 놓았지. 점점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그런 것이다. (중략) 부엌 바닥을 조금만 높이면 된다. 연탄보일러만 놓으면 된다. 이것이 생활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문화재 원형 보존이라는 면에서 보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것을 K시에서 문제로 삼으면 문제가 된다. 경상북도나 문화재청도 같은 입장이다. 크게 하면 안 되지만, 필요불가결한 것은 인정해주고 있다⁵⁰.”

위의 말에서 보듯이, K시는 Y 마을 고가옥 거주자

45 강동진, 2006, 『지나간 경주 양동마을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p. 145

46 “실질적으로 사는 분들이 문화재청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 안 한다. 옛날부터 K시청 문화재과에서 왔다고 하면 좋은 평을 안 들었다. 골이 깊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지정해주고 발전도 안 되고 소득도 없고, 제재만 하고 하니까 불신감만 높다. 제재는 많이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많고 실질적인 소득과 혜택이 없다.”(임○○, 49세, 남.)

47 ○○자, 여.

48 ○○락, 남.

49 강동원, 1997, 위의 논문, p. 151

들이 가옥을 개조하는 것을 묵인해주는데, 그 이유는 거주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이다. K시도 고가옥 거주자를 감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재청과 K시가 꾸준히 감독하고 있지만, 거주자들은 가옥의 불법 개조를 수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고가옥의 주거생활에서는 거주자의 현대 주거생활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속마을 거주자들 스스로도 자신이 거주하는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되었기에 보존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남들과 다른 제약을 받고 있지만, 이런 제약의 이면에는 문화재를 보존하고 지키고 있다는 거주자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가옥을 전면 개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K시는 문화재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거주자들의 개조를 허용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고가옥의 내부와 외부를 거주자 임의로 개조할 수 없지만, 거주자가 주거생활의 최소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내부 개조는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내부 개조를 묵인해주다보니 거주자들은 가옥 내부 개조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K시가 내부 개조에 한해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거주자들의 주거생활의 불편을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불법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주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선별하여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마을 보전에 도움이 되며 더 큰 악화를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⁵¹.

“내가 제재를 하지만은 안채 개방 안 된 곳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향단이나 ○○당도 앞채(사랑

채)는 개방이 되었는데. 그래서 개조를 하면 내가 제재를 하지. 개개인 집에 다 그렇게 해 놓았다. 부엌은 방법 없다. 실지로는 안 된다. 입식부엌도 안 되는데, 나로서는 내가 암만 관리인이고 다 알지만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거 와리 놓았는교(이것 왜 설치하셨습니까)’. 못 한다. 그런 소리는 솔직히 못 해. 내가 너무 지나친 것 같더라. 살림 사는 곳은 그렇더라고⁵².”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K시는 거주자들이 고가옥에 입식부엌과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한다. 만약 K시가 이런 것 하나하나 제재하면 거주자의 불만도 높아지고, 고가옥을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기관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권고조치를 해주는 등 조금은 관대하게 처리하지만 여전히 거주자가 국가기관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가옥 개조에 대한 묵인 범위가 가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지체가 높고, 위상이 높은 집,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과 문화재 비지정 가옥에 대하여 가옥 개조에 대한 암묵적 인정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앞 집(일반 민가) 경우에는 까추를 달아서 하다가 현재 중단이 되었다. (중략) 샷시를 다 뜯었다. 앞에 샷시를 다 띠고, 내가 그랬거든, 만약에 이것을 샷시를 달고 하면 문화재보호법이 굉장히 무섭거든. (중략) 내가 자체적으로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다. 현재까지는 철거 중에 있다. (○○당에도 샷시가 있는데) 주춧당에 샷시는 안채를 말하는데 마루 앞에 샷시를 한 것을 말하지. 근데 글로는 여기 보면은 Y 마을의 현실은 내가 왔을 때부터, 집안의 내부 보수는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어져있다. 실지로 대청마루라고 하나 그 마루 옆에 샷시를 해서 만들어두었던데. 내가 보는 경우에는 그래요. 관광객에게 개방된 곳은 내가 제재를 하지만은, 안채 개방

50 K시청 관계 직원.

51 강동진, 1997, 앞의 논문, p. 212

52 ○○식, 49세, 남.

안 된 곳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⁵³.”

위의 말에서 K시는 문화재 비지정 가옥에 사시를 설치했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가옥의 외형 변경 사항을 보고하여, 설치된 사시에 대해 철거 명령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 가옥에 설치한 사시는 외부에서 노출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볼 때 마을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당의 경우, 안채 전면에 사시를 설치하였지만, 이것은 철거 대상이 아니다. ○○당의 사시는 안채에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재청이나 K시는 마을의 지정문화재 고가옥에 대해서 가옥 개조시 암묵적 승인의 범위가 넓지만, 문화재 비지정 가옥에 대해서는 가옥 개조시 암묵적 승인의 범위가 좁다. 또한 문화재청과 K시는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 중에서 위상이 높은 고가옥, 위상이 보통인 고가옥, 관리자가 거주하는 고가옥에 대해서 개조에 대한 암묵적 승인에 차이를 두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Y 마을은 양성 반촌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 일가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K시에서 만약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면 바로 문화재청에 신고하지 않고 마을보존위원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권고를 한다.

“내가 철거해야 되는 것은 1차적으로 보존위원회 위원들에게 협의 해주고 그 분들이 일가 되고 가까운 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보존위원회 소속의 친척분들이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한다. 아재 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해결을 해주더라⁵⁴.”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K시에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문화재청에서 보고하기보다는 마을보존위원회를 통해서 거주자들의 자발적 철거를 유

도한다. 마을보존위원회에서는 K시에 적발되면 보존 위원들 중에 가옥 주인과 친척인 위원이 먼저 거주자를 찾아가서 철거할 것을 권고하는데, 만약 그 시설이 정말 주거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시 보존위원회에서 K시와 상의를 해서 K시에서 허용하는 범위와 거주자가 허용하는 범위를 서로 절충할 수 있도록 한다. K시는 무조건 문화재청에 보고하기보다는 거주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서 시정 권고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 사실을 거주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K시의 권고를 따르려고 노력한다.

Y 마을 고가옥 거주자는 분명히 다른 일반 농촌의 거주자보다 주거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고가옥 거주자는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래식 부엌을 현대식 부엌으로 교체하고 보일러와 사시, 목욕탕을 설치했다. 국가기관에서는 이러한 거주자의 불법 개조 행위를 알고 있지만, 강력하게 제재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암묵적으로 문화재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불법 건축 행위를 묵인한다. 이런 묵인은 국가기관이 고가옥 거주자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거주자를 무조건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과 거주자가 각자의 목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만, 각자가 그 합의점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국가기관과 거주자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⁵⁵하려고 노력한다.

결론

Y마을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면서 거주자의 주거생활은 크고 작은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 거주자들도 기본적인 생활권을 누리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가의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Y

53 ○○식, 49세, 남.

54 ○○식, 49세, 남.

55 이 글에서 절충의 의미는 국가와 거주자간의 암묵적 합의를 의미한다. 국가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거주자들으 제약할 수 없고, 거주자들 역시 자신들의 편리성만을 추구할 수 없다. 이런 대결 속에서 이들 각자가 최소한의 양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마을 고가옥 내 주거생활에 대해 고가옥의 문화재 지정에 따른 주거생활의 제약을 살펴보고, 거주자들은 이 제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현지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거주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편리함 조차도 제약을 받는다. 거주자들은 가옥의 부엌, 화장실, 보일러실 등의 신·개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당국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가옥들은 마당이 흙으로 되어 있어서 가옥 내로 들어오는 먼지가 큰 문제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샷시를 설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또한 가옥 내부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 역시 거주자들에게는 제약이다. 간단한 주차 시설이나 농기구 창고 등을 지을 수 없기에 가옥과 멀리 떨어진 공동 농기계 창고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민속마을로 지정되면서 거주자들이 그나마 혜택을 받는 것이 바로 가옥의 무상수리이다. 하지만 이 역시 거주자들은 못마땅하게 여긴다. 자신의 가옥을 무상으로 수리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기간 중 거처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가옥을 수리할 때 현대식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초가집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거주자들은 초가집에서 거주하면서 겪는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사소한 불편함은 거주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민속마을 거주자들 역시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당연하다. 그래서 거주자들은 불법적으로 가옥 개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가기관에서도 일정부분 알고 있지만, 무조건 법의 잣대로 그들의 일상생활을 제약만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개조의 암묵적 허용은 거주자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는 권리와 국가의 문화재보호정책이 절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거주자들도 국가 기관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개조하고, 국가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거주자의 가옥 내 개조를 허용해준다. 이는 곧 국가와 거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불만을 봉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거주자와 국가의 이런 노력은

결국 민속마을의 보존과 지속을 위한 것이다.

이 논문은 문화재보호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민속마을 거주자들의 입장에서 문화재보호법을 바라보려고 하였다. 이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국가 제도 집행과 그에 따른 주민의 권익 보호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책 입안과 시행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민속마을 내 문화재 비지정 가옥과 지정 고가옥을 충분히 비교하여 분석하고, 다른 민속마을 내 가옥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고가옥에 대한 문화재 정책의 난점과 방향 설정을 위한 일반적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를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 / 고 / 문 / 헌

- 강동진, 1997,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3,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양동마을 주민의식 변화」, 『한국조경학회지』 제31권 3호, 한국조경학회
- _____, 2006, 『지나간 경주 양동마을 이야기』, 한국학술정보(주).
- 김근영, 2003, 「현대 도시에서 한옥의 의미 -서울 북촌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석사)
- 김용환 · 오석민, 1995,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속마을」, 『비교민속학』 제12집, 비교민속학회
- 김창민, 2009, 「민속마을 지정과 전통의 정치성-외암리 사례-」, 『지방사와 지방문화』 12권 1호, 역사문화학회
- 경상북도, 1979, 『양동마을조사보고서』
- 경주시, 1994, 『양동민속마을 정비계획조사보고서』
- _____, 2002, 『양동민속마을 綜合整備計劃報告書』
- 문화재청, 2004, 『민속마을 보존·정비 및 종합정비 세부실천계획』, 문화재청
- 여경옥, 2003, 「낙안민속마을의 주거변형 및 보존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석사)
- 오세탁, 1997, 「문화재보호법과 그 문제점」, 『문화재』 3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우성기, 2006, 「문화재보호와 재산권의 보장」,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유수진, 2008, 「문화재보존과 관련한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의 문제에 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0집,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왕기 · 이강복 · 최흥기, 2001, 「牙山 外岾마을의 住居變化에 관한 研究 -1988년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지정 이후 2001년까지-」, 『건축역사연구』 제10권 3호, 한국건축역사학회
- 이주욱 · 한필원, 2002, 「중정지역 문화재지정 한옥 생활공간의 변용」, 『大韓建築學會 學術發表論文集』 제22권 제2호
- 이호열, 2005, 「민속마을 및 전통주택의 보존」, 『건축』 제49권 12호, 대한건축학회
- 정문교, 2001, 『문화재행정과 정책』, 지식산업사
- 장성조 · 김일진, 1994, 「文化財로 指定된 傳統住宅의 住居行態 및 變形實態에 關한 研究」, 『大韓建築學會 學術發表論文集』 第14卷, 第2號
- 정 훈, 2003, 「문화재지정과 재산권보호」,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탁수성, 1993, 「문화재지정 전통가옥 보전을 위한 주거공간 이용행태 및 변형실태 연구 : 서부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함한희, 2005, 『부억의 문화사』, 살림

Mun Hwa Jae Vol 42, No. 04, December 2009, pp. 74~95
Copyright ©200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nflicts and Compromises due to Legal Limitations among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With a focus on the residents of old houses in Y village of K

Son, Dae Won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Received : 29 October 2009 | Revised : 1 December 2009 | Accepted : 8 December 2009

Abstract

Folk villages have higher historic and cultural values than other villages and contain considerably many traditional elements today. In Korea, there are seven folk villages that are under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Unlike other kinds of tangible cultural assets individually appointed according to the act, those folk villages are protected by the act in entirety including the houses and auxiliary structures inhabited and used by the villagers. Since the act covers the entire villages, the residents are not allowed to repair or renovate their structures and accordingly suffer from huge limitations in everyday life with housing life under the biggest restrictions.

Being appointed as a folk village is positive from the perspective of preserving the village. However, it is negative to the villagers because of the limitations to their housing lives. While common people lead a convenient life by the introduction of high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they do not get to benefit from such technologies for the cause of preserving the traditional culture. Upon the appointment, they are subject to all sorts of building regulations and under hug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those regulations across many different aspects of life including housing life. Thus the residents of folk villages do have many complaints about the act. It is only natural that there occur conflicts between the state, which tries to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according to the act, and the residents, who pursue convenience in life.

At the same time, it is natural too that the residents have the desire to pursue convenience in daily life. Thus they renovate their houses illegally. The government agencies are aware of that, however, it is not right for them to enforce the act and restrict their daily lives. Their tacit approval of such illegal renovations is the product of compromises between the residents' right to their private property and the state's policies of cultural asset protection. The residents try to renovate their houses within the limit that will not call for legal restrictions from the government agencies. The government allows for renovations as long as they are within the minimum limit. It is the result of efforts for the state and the residents to stitch up and compromise their own complaints.

Keywords |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limitation with housing life, interior renovations, private property right, intermediate limitations and compromises